

#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

## 입주 대상

○ 신청일 기준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7년 미만 기업으로서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경기도 이전 가능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업

1. 「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」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(또는 받으려는) 기업
2. 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3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「지식산업」, 「정보통신산업」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4. 그 밖에 신기술 및 기술집약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

※ 벤처 인증기업 우대

## 입주 제한

○ 아래 제한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

1. 폐수·소음·진동 등 공해유발기업
2.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신용불량거래자로 분류된 자
3. 휴·폐업 중인 기업
4. 집적시설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의 기업
5. 기타 평가과정에서 부적당하다고 평가되는 기업

[별첨]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

○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조제6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엔지니어링사업                 | 8.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            |
| 2. 전기통신업                   | 9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       |
| 3. 연구개발업                   | 10. 방송업                      |
| 4.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| 11. 정보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
| 5. 영화·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  | 12.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      |
| 6. 전문디자인업                  | 13.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(자영예술가 제외) |
| 7.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      | 14.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             |

○ 「신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         | 15.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|
| 2.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               | 16.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           |
| 4.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| 17.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               |
| 5. 광고물 작성업                   | 18.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            |
| 6.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   | 19. 물품감정,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          |
| 7. 출판업                       | 20. 무형재산권 임대업                    |
| 8. 전문 디자인업                   | 21. 광고 대행업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포장 및 충전업                  | 22. 옥외 및 전시 광고업                  |
| 11. 경영컨설팅업                   | 23.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             |
| 12.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            | 24.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
| 13.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4.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5.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○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

1.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2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3. 자료처리,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
4.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
5. 전기 통신업